





용인 행정타운 두산위브

공 • 급 • 안 • 내

용인 행정타운 두산위브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주택은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청약으로 진행하되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시어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6항에 따라 현장 청약도 가능합니다.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청약 기상 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 ▣ 본인의 자격 시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버랍니다.
- 본 주택은 2007. 09. 0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되는 주택으로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 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비랍니다.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사이트(www.weveapt.co.kr내 설치)를 운영하오니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 인터넷사이트만을 관람하고 청약시 경우에 따라서 판단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기간 동안 실제 견본주택을 방문해 확인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본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관계법령에 의해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됩니다.(단, 향후 주택법 및 관련법령 개정 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A1블럭(1단지)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용인시청 주택과 8032호(2011.4.6.)로 입주자모집 공고승인
- 공급위치 : 용인시 처인구 삼기동 284-2번지 외 25픽지(A1븍립)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14~18층 3개동 총 19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다자녀 특별공급 9세대]
- 공급대상 및 공급내역

											(단위: m²)	
							세대 별	계약 면적				
구 분	아파트코드 및 주택 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층수	세대 수		공급 면적		3151.70	20 TOX (02 E2 E2)	-IOLDITI	세대 별 대지 지분	
	(도울인모)				전용	주거 공용	소계	기타공용	지하 주차장 (연결 통로 포함)	계약 면적		
민영주택	201 1000 276-0 1	104.2500	18	100	104 .2500	25,6313	129,8813	12,0027	59,6740	201 .5580	85,1600	
건강구백	201 1000 276-0 2	104 .3400	18	99	104 .3400	25,0 162	129 .3562	12,0130	59,7255	201 .0947	85,2335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77 70s		계약금	1차중도금	2차중도금	3차중도금	4차중도금	5차중도금	6차중도금	잔금
주택형별	층	세대수		공급금액		5%	10%	10%	10%	10%	10%	10%	35%
			대지비	건축비	분양가	계약시	2011.08.20	2012.01.20	2012.05.20	2012.09.20	2013.01.20	2013.05.20	입주시
	1층	6	218,423	247,677	466,100	23,300	46,610	46,610	46,610	46,610	46,610	46,610	163,140
104.2500	2층	6	218,423	262,877	481,300	24,060	48,130	48,130	48,130	48,130	48,130	48,130	168,460
	기준층	88	218,423	288,277	506,700	25,330	50,670	50,670	50,670	50,670	50,670	50,670	177,350
	1층	3	218,612	245,588	464,200	23,210	46,420	46,420	46,420	46,420	46,420	46,420	162,470
104.3400	2층	6	218,612	260,688	479,300	23,960	47,930	47,930	47,930	47,930	47,930	47,930	167,760
	기준층	90	218,612	285,988	504,600	25,230	50,460	50,460	50,460	50,460	50,460	50,460	176,610

※ 2009.4.1 주택공급에관하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기존 주택형 표기방식(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을 주거전용면적으로 변경하여 표기하였을

A2블럭(2단지)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용인시청 주택과 8032호(2011.4.6.)로 입주자모집 공고승인
- 공급위치 : 용인시 처인구 삼기동 277번지 외 51필지(A2블릭)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8~20층 9개동 총 624세대 및 부대복리시셀다자녀 특별공급 31세대
- 공급대상 및 공급내역

(단위: m² 천원)

(단위: m² 처워)

								세대 별	계약 면적			
-	2 분	아파트코드 및 주택 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층수	세대수		공급 면적		기타공용	지하 주차장 (연결 통로 포함)	계약면적	세대 별 대지 지분
		(L2C2)				전용	주거 공용	소계	기다 등등	시아 무사성 (현실 종도 포함)	세약번식	
		201 1000 277-0 1	84.7 200	18	102	84.7 200	27,6 083	112 .3283	5,6346	37.1890	155.1519	53,7483
		201 1000 277-0 2	84.7400	18	102	84.7400	27,5432	112,2832	5,6359	37.1978	155.1169	53,7610
		201 1000 277-03	84.9400	18	204	84.9400	28,7528	113 .6928	5,6492	37,2856	156.6276	53,8879
п	영주택	201 1000 277-0 4	120,8000	20	72	120 .8000	26,5349	147 .3349	8.0342	53,0268	208.3960	76,6383
	8TH	201 1000 277-05	120 .8400	20	72	120 .8400	27,5 209	148 .3609	8,0369	53.0444	209.4421	76,6637
		201 1000 277-0 6	148 .9700	20	36	148 .9700	32,2795	181 .2495	9.9077	65,3924	256.5497	94,5 100
		201 1000 277-0 7	148 .8600	20	18	148 .8600	33,3 432	182,2032	9.9004	65,3441	257 .4478	94.4402
		201 1000 277-08	153 .8200	20	18	153 .8200	34,0683	187 .8883	10,2303	67.5214	265 .6400	97.5870

■ 공급금액 및 난부일정

													(- 11 - 111 , - 1
				공급금액		계약금	1차중도금	2차중도금	3차중도금	4차중도금	5차중도금	6차중도금	잔금
주택형별	층	세대수		0805		5%	10%	10%	10%	10%	10%	10%	35%
			대지비	건축비	분양가	계약시	2011.08.20	2012.01.20	2012.05.20	2012.09.20	2013.01.20	2013.05.20	입주시
84,7200	2층	6	155,308	186,692	342,000	17,100	34,200	34,200	34,200	34,200	34,200	34,200	119,700
04.7200	기준층	96	155,308	204,792	360,100	18,000	36,010	36,010	36,010	36,010	36,010	36,010	126,040
04.7400	2층	6	155,345	186,655	342,000	17,100	34,200	34,200	34,200	34,200	34,200	34,200	119,700
84.7400	기준층	96	155,345	204,655	360,000	18,000	36,000	36,000	36,000	36,000	36,000	36,000	126,000
04.0400	2층	12	155,712	186,288	342,000	17,100	34,200	34,200	34,200	34,200	34,200	34,200	119,700
84.9400	기준층	192	155,712	204,288	360,000	18,000	36,000	36,000	36,000	36,000	36,000	36,000	126,000
400 0000	2층	2	221,450	265,050	486,500	24,320	48,650	48,650	48,650	48,650	48,650	48,650	170,280
120.8000	기준층	70	221,450	290,750	512,200	25,610	51,220	51,220	51,220	51,220	51,220	51,220	179,270
100 0400	2층	2	221,523	268,477	490,000	24,500	49,000	49,000	49,000	49,000	49,000	49,000	171,500
120.8400	기준층	70	221,523	294,277	515,800	25,790	51,580	51,580	51,580	51,580	51,580	51,580	180,530
148.9700	기준층	36	273,091	357,009	630,100	31,500	63,010	63,010	63,010	63,010	63,010	63,010	220,540
148.8600	기준층	18	272,889	360,611	633,500	31,670	63,350	63,350	63,350	63,350	63,350	63,350	221,730
153 8200	기주층	18	281 982	371 218	653 200	32 660	65 320	65.320	65.320	65.320	65.320	65.320	228 620

※ 2009 4.1 주택공급에라하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기존 주택형 표기방식(전용면접 + 주거공9면 접)을 주거전9면적으로 변경하여 표기하였음

A3블럭(3단지)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용인시청 주택과 8032호(2011. 4. 6.)로 입주자모집 공고승인
- 공급위치: 용인시 처인구 삼기동 268-1번지 외 12필지(A3블럭)
- 공급규모: 아파트 지하 3층 ~ 지상 10~20층 7개동총 47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다자녀 특별공급 23세대]
- 공급대상및 공급내역

							세대 별	계약 면적			
구 분	아파트코드 및 주택 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층수	세대수		공급 면적		기타공용	지원 조원 자 (여겨 투고 교육)	계약 면적	세대 별 대지 지분
	(1202)				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다 중앙	지하 주차 장 (연결 통로 포함)	제약 변식	
	201 1000 278-0 1	84.3300	20	119	84,3300	27,5354	111 .8654	6,51 25	39,3433	157.7212	52,1343
	201 1000 278-0 2	84.7200	20	69	84,7200	28,1 427	112 .8627	6,5426	39.5253	158.9306	52,3754
	201 1000 278-03	84.7400	20	66	84.7400	28,0777	112,8177	6.5442	39,5346	158.8965	52,3877
민영주택	201 1000 278-0 4	120.8000	20	66	120 ,8000	27,0710	147 .8710	9,3290	56,3580	213.5579	74,6806
건강구역	201 1000 278-05	120.8400	20	74	120 .8400	28,0571	148 .8971	9,33.21	56,3767	214.6058	74.7054
	201 1000 278-0 6	148.9700	20	36	148 .9700	32,3 477	181 .3177	11.5044	69,5004	262.3226	92,0958
	201 1000 278-0 7	148.8600	20	20	148 .8600	33,4114	182,2714	11.4959	69,4491	263.2164	92.0278
	201 1000 278-0 8	153.8200	20	20	153 .8200	34,1 388	187 .9588	11.8790	71,7631	271 .6009	95.0942

■ 곱금액 및 ⊯일정

- 000 0 1 % 0	11 =0												(CTI - III , C22)
				77 70		계약금	1차중도금	2차중도금	3차중도금	4차중도금	5차중도금	6차중도금	잔금
주택형별	층	세대수		공급금액		5%	10%	10%	10%	10%	10%	10%	35%
			대지비	건축비	분양가	계약시	2011.08.20	2012.01.20	2012.05.20	2012.09.20	2013.01.20	2013.05.20	입주시
	1층	4	168,324	161,576	329,900	16,490	32,990	32,990	32,990	32,990	32,990	32,990	115,470
84.3300	2층	6	168,324	172,276	340,600	17,030	34,060	34,060	34,060	34,060	34,060	34,060	119,210
	기준층	1 09	168,324	190,276	358,600	17,980	35,860	35,860	35,860	35,860	35,860	35,860	125,510
	2층	3	169,102	172,898	342,000	17,100	34,200	34,200	34,200	34,200	34,200	34,200	119,700
84.7200	기준층	66	169,102	190,898	360,000	18,000	36,000	36,000	36,000	36,000	36,000	36,000	126,000
84.7400	2층	3	169,142	172,858	342,000	17,100	34,200	34,200	34,200	34,200	34,200	34,200	119,700
04.7400	기준층	63	169,142	190,858	360,000	18,000	36,000	36,000	36,000	36,000	36,000	36,000	126,000
120,8000	2층	4	241,118	291,482	532,600	26,630	53,260	53,260	53,260	53,260	53,260	53,260	186,410
120.8000	기준층	62	241,118	319,582	560,700	28,030	56,070	56,070	56,070	56,070	56,070	56,070	196,250
120 0400	2층	4	241,198	295,102	536,300	26,810	53,630	53,630	53,630	53,630	53,630	53,630	187,710
120.8400	기준층	70	241,198	323,402	564,600	28,230	56,460	56,460	56,460	56,460	56,460	56,460	197,610
148,9700	기준층	36	297,345	390,155	687,500	34,370	68,750	68,750	68,750	68,750	68,750	68,750	240,630

32,830

63.590

65,660

※ 2009 4 1 주택공급에관하다친 일부 개정으로 인해 기존 주택형묘기방식(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을 주거정원면적으로 변경하여 표기하였음

338.774

359.474

635.900

656.600

■ 공통사항

148.8600

153 8200

- •매도인을 갑이라 칭하고 매수인계약자을 "을", 시공사를 "병"이라 칭탄다.
- •분양기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있음.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38조 2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테 적용주택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용인시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내에서 주택형별 충별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금액임.
- •본 주택중 전용면적 85m를 초과하는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제4형에 따른 제2종 국민주택체권 메인대상주택이나 채권입찰제도 시행자침에 의거 채권매입상한액
- •상기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공히소유권 이전등/ 비용, 취득세, 등록세, 기타 제세금이 미 포함되어 있으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 차세가 포함된 금액임.
- •상기세대별계약면적에는 관리실 경비실 주민공동사설 기계실 전기실 등의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지하주차장에 대한금액이 상기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총수는 건립통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라인의 최상총 총수임(딸로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총·호수를 적용하여 총·호수를 선정하였으며, 실제 총수에 해
- 당하는 층 · 호수를 고려하여분양기를 산정하였으며, 층 · 호수는 동호수 배치도를 참고하시기 바람)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장이 전체 공사비부자매압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장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활하여 받 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 기준공정 시점 이후 중도금 납입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수 있음.
- •본 이피트의분양 중도금은 당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있음.(단, 정부 정책 등으로 변경될수 있으며, 대출 미 신청자와본인의 부작력 사유로 인하 여 대출이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직접 납부하여야 함.)

•진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반되 주택공급에만한규칙 제26조에 의거 납부할 수있으며, 임사사용승인을 받아 압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압주금의 10%에 해당하 는 금액을 제외한 진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압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압주진금은 사용검사일 이후 납부하여야 함.

65.660

69.120 65,570 63.590

65,660

65.660

229.810

(단위: 원 부가세포함

- ullet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ullet 파산 등으로 보증시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대한주택보증(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당 사업자는 주택공급에관한뮤취 제19조 6형에 의거 "3자녀 이상무주택 서대주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적용주택으로 전체 건설량의 5%를 특별공급함.
- ·상기 세대별 대자자본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항후 자작장의에 따른 대자면적 확정 또는 법령에 따른 공부장의절차 등의 사유로 인해 중감이 있을 수 있으며 분양기를 기준으로 정산토록 함.
- •근민생활시설(단지내 상기은 상기 공급대상 및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적 이하 단수 조정등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63.590

65.660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금액이 포한되지 않은 금액이며, 발코니 확장은 분양계약자가 선택하는 사항임

63.590

65,660

- •마이너스옵션품목은 분양계약자소택 사항이나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옵션품목이 포함되 가격인
- •상기 공급세대의 창안접수는 동•라인별 총별 호별 구분없이 주택형별 | 창안순위별로 접수받아 동•호수를 주침하며, 추침결과에 따라각 동•라인별 총별 호별로 구분됨.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전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진금은 입쥬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
- •중도금 및 진금 납입일이 토,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익일 최초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발코니확장 공사에 따른 공사비용(부가기차세 포함)은 이제 표의 해당금액으로, 확장 공사에 따른 공사비용은 분양기에서 제외되어 있음.

주택형(주거전용면적) 104,2500 104,3400 확장공사비 12,826,000 9,691,000

■ A2블럭(2단지) (단위: 원, 부가세포함) 주택형(주거전용면적) 84 7200 84 7400 84 9400 1.20 8000 120 8400 148 9700 148 8600 153.8200 7.5 46, 000 7,546,000 9 273 000 13 827 000 확장공사비 10 120 000 13 101 000 15 015 000 15 015 000

■ A35 4(35)	N)								(단위: 원, 부기세포함)
주택형(주거	전용면적)	84.3300	84.7200	84.7400	120.8000	120.8400	148.9700	1 48 . 86 0 0	153.8200
확장공/	베	9,394,000	7,546,000	7,546,000	13,827,000	10,120,000	13,101,000	15,015,000	15,015,000

※ 공동주택이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 건축법사행령 제2조제 항제 4호, 제46조제4항, 제5항의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량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구조 변경할수 있다.
- 상기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장한 금액이 며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통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가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위한 감소비용과 추가설치품목 증기비용이 장사된 금액임
- 발코니 확장제품의 제조사와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또는 산제품 출시, 성능개선등의 사유로 등급 이상으로 변경될수 있으며 기타신청형별 확장하다. 등서부사형은 분양 카멜로그 및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바람
- •발코니 확장청호는 내등압 구조검토등의결과에 따라서대별, 총별, 위치별로청호규격 및사영유리, 청틀이동급 이상으로 일부변경될 수있음.
- •사공상의 문제로 일정사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계약이 불기하며 이파트 공급계약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발코니 확장마기면형킨막이 제거변경은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의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적합하도록시공되어야하므로 사업주체가직접시공하도록제한함.
- •발코니 확장생하층 및 좌우 세대간발코나확장이부가 다를 경우 등에 따라단할째의 위치 백제의무께, 찬장 환기구위치, 에어컨데립배관 위치, 세대간마당등이 상이할수 있고, 살내슴도등 생활습관에 따라받고나사니및 유리, 기타 확여부위에 결혼한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알주세서환기 등으로 예방하시키 한
- 발코니 외부전만창 설치및 발코니회장에 따른 냉난방비용의상승이 있을수 있음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록세등이 부과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계약은 공동주택공급계약시 별도의계약을체결하여야함
- ·비확장형 산택서대는 확장형 서대와는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한대부인테리아가 적용다므로게약자는게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비람.

•광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사람짜임의 규장에 와거 당착자는 당첨된 동·호수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제사하는 기본미감재 수줍었만, 백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용품 등에서 압주자가 작업 산택 사용할 품목의 가격을 재위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나스 옵션 품목은 압주자모집당고 시 제외된 미감재 품목 과 그에 번의 나에서 사업주체가 전하나면 기주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은

품 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사공되지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사용되는 품목
문	문(문틀, 굥틀, 도어록 및 경첩 등 하드일체, 문선)	발코니 P.창호(내큐), 소방·관련 방화문
바닥	바닥재(온돌마루, 현관바닥티일,, 현관디딤판 등 일체), 걸레받이, 발코나바닥타일, 재료분리대 등	바닥난방, 바닥미장
벽	벽지, 장식벽(티일, 래핑 및 비닐 패널류), 발코니벽 도장, 신발장, 화장대, 드레스룸장 등 가구일체	마장 또는 석고보드 마감
천장	천정지(벽자류), 반자돌림(몰당), 천정 인테리어마감 , 발코니 천정도장	천정틀 위 석고보드 미감
욕실	천정 , 타일 , 위생기구(욕조, 양변기 , 세면기 등) , 사유부스 , 욕실 액세서리 , 욕실장 , 욕실환풍기 , 비데, 욕실 스피커폰, 바닥 배수커버, 설비 수전류	조적 , 방수 , 미장 , 설비배관 , 전기배관해선
주방	주방 가구 및 가구(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벽타일, 설비수전류, 렌지후드, 주방액정TV 등 주방가구 일체	소방관련시설, 설비배관, 전기배관/배선
조명기구	조명기구 및 각종 스위치	구조체매입등, 비상등

■ A1블럭 (1단지)								(단위 : 원 부가세포함)
주 택 형	104.2500	104.3400						
기본선택(마이너스옵션)	24,606,000	24,506,000						
■ A2블럭 (2단지)								(단위 : 원, 부가세포함)
주 택 형	84.7200	84.7400	84.9400	120.8000	120.8400	148.9700	148.8600	153.8200

27,492,000

27,684,000

33,250,000

33 .425 .00 0

34 .468 .000

■ A3블럭 (3단지)

기본선택(마이너스옵션)

(단위 : 워 보가세포함) 주 택 형 84,3300 84,7200 84,7400 120,8000 120,8400 148,9700 153,8200 20,670,000 20,662,000 27,592,000 27,784,000 20 .488 .00 0 33.262.000 33.437.000

공동주택분강 [각일산장등에관한규칙 제조화] 의거 마이너스 옵션 작용품목은 분강 [각에 포함되는 품목으로서 일주자가 작접 선택하여 시공할 수 있으며, 입주자가 일괄산청 시에 해당 품목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이태에 제시된 품목과 금액으로 시압주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제결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시항

•마이나스 옵션은 살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막에 해당하는 광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암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사용하는 방식임. •상기 마이나스 옵션 개약은 품목별, 살벌, 유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필로 선택하셔야함.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발코니 활장옵션을 선택할 수 없음 전혀 이후 계약시험이 변경이 불가하였다. 신청 시주의하시기 바람) •분양계약 이후에는 마이너스 옵션을 추가 신청 및 변경이 불가한,

20,564,000

•마이트스 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 공사는 사용과사 연료 및 진급부 이후 공사가 기능하입니 이점 감안하여 옵션한 및 인준계획을 세우시기 비리며 공사 한은 소음 본지 등의 문제로 인주지정 개시입부터 60일 이내까지 관련 법 규정을 주수하여 완료하여야 한

•마이나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가본법 시행령 제8조제 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한만원을 넘는 경우 살사단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환보 및 하지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사용하여야함.

20,822,000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론된 실시간축공사 업자가 사용을 하다면도 하지 행보충보호가 없어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후 공사 착수하시기 바람. •미이나스 옵션 부분 공사 시기 사용된 소방, 통신, 잔기, 설비사설및 방수, 단열 미장사설 등 기타 기사용사설물 훼손 시메는 원생국구 및 배상의무가계약자에게 있음.

•마이나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자는 건축법 자연조, 건축법사병병 제61조건축물의 파난 및 방화 단에 관한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자자를 사용하여야 함 •마이나 옵션 품목의 사공에 따라 발생하는 하자 및 법령 등에서 정하는 기준 위반으로 인한 알베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미이나스 옵션을 스탠히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개발적으로 사용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완전적으로 하자적인이 불분명한경우 가존의 시행자 사용분 사실은 작업한경리 감독을 통한 사용으로 사용승인을 특히였으므로 본이피트 사업주체에게 일본적으로 하지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지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병 의무는 계약자보안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미이나스 옵션 게약서대는 기본선택품목마이나스 옵션사명, 설치면런 확약서를 착성하여야 한 •미이나스 옵션 세대의 통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압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있음. •상기 마이나스 옵션 금액에는 주독세, 등록세가 미포한되어 있음.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등을 자자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화하십 경우는 당첨된 통·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공급가임을 체결하셔야 항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개약자의 분양금 납압비율도 알변함 개약자와 동일학

20,572,000

■ 특별공급

• 특별공급일정

신청자격	거 주 구분	접수일자	청약접수 장소/시간	추첨 및 당참자 발표
특별공급 신청자격 구비자	경기도,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2011.04.12	당사 견본주택 / 10:00~14:00	2011.04.12 / 당사 견본주택 / 16:00

st 당사는 특별공급 당참자만을 선정하며, 당참자에 대한 동·호수배장은 금융결제원에서 알반공급 당참자와 함께 무직위 추첨하여 결정함.(일반공급 당참자 발표일에 특별공급 동·호수배장결과 발표)

■ 특별공급 유의사항

전 주택형

※ 사이게 있음을 유입하시기 바람 • 가지사형이 사실과다르기나 기자사용을 강색 또는 확인점과 핏점요소 자견이 다른기나 무주택/ 무이 사람 경우 분양자약 체결 이후라도 당착취소 및 개원했다는 물론 관련병에 의거 처럼다므로 유입하시기 바라며 개인하지 시 개연극 보본군에게 대한병도의 이지는 지금되지 않는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충복당첩 시 특별공급만 당천으로 인정하며 알반공급 당천은 우호차고한. •특별공급 당천자로 동·호수를 배정보고 공급차일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천지한별 수 있으며, 해당 구비사류 마비 시 체언체결 후기도 개막이 해제될 수 있음. •특별공급 당천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본 주택의 당천 이 취소됨 • 특별공급 당창자의개별통자는 하지 않으며 당창자 당근에 대한 전혀문의는 하지 않으니 양자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신청 이후에는 신청 잡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취소나 장당을 할 수 없음

1) 다자녀무주택 세대주특별공급

- 신청자격

• 주택용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6형에 해당하는 지로서 최초 압주자모집 공고일(2011.04.07)한재 수도권(사율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 20세 마만의 작게 지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배우자 또는 작개준비속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이나한 세대의 세대주)에게 공급주택 명, 범위(주택형별 세대수의 명, 이내에서 특별 공급형. •단, 만 60세 이상의 작계존속 도 작에 하당하는 자른 세대주의 이나이도 이를 세대주고 감주함. 흥별공급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아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단, 주택공급의관한구간) 제 19조 제 행제1호, 제3호, 제 4호, 제 4호의 2 및 제7호, 제 2형, 제 2형, 제 1호 제 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함]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함. ① 참의에 금주택함 약중환자축 포함에 기입하여 6개월 이상이 강파되고 자꾸별/연조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참의부금주택함 약중환자축 포함) 기입기 (이 6개월 이상 강파 되고 매월 악정남입실에 월날입금을 납입하여 자락별 면적별 가준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에는 에치금액 이상인 자 (코가유공자 또는 그 유축, 당해 주택을 건설하는 자력에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 및 가주한 자, 상해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등은 싱가 요건사형에서 제외 함 **각 청약통증별 판매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일주자 선정방법 : 다지녀 특별공급 배질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통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마성년 자녀수가 많은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열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 • 다지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지침(국토 해왕부 주택건설공급 과 - 5485[2009.12.4]에 의거 경기도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나마지 50%를 서울특별시 인천평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장반이 있는 경우 "우선순위 배공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다자녀 무주택 세대주특별공급 세대수

■ A1블럭 (1단지)

• 공급세대 : 총 주택건설량의 5% 범위 이내로 총 9세대 104,3400 다자녀트벽공급 서욱 특별시 : 인천광 열시

■ A2블랙 (2단지)

• 공급세대 : 송 수택건설탕의 :	5% 멈위 이대로 총 31세대								(단위: m², 세태)
주	택형	84.7200	84 .740 0	84 .940 0	120,8000	120,8400	148.9700	148.8600	153,8200
	경기도	3	3	5	2	2	1	1	
다자녀특별공급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2	2	5	2	2	1		
	합계	5	5	10	4	4	2	1	

■ A3블럭 (3단지)

• 공급세대 : 총 주택건설량의 :	5% 범위 이내로 총 23세대								(단위: m², 세태
주	택형	84.3300	84 .720 0	84 .740 0	120.8000	120.8400	148.9700	148.8600	153.8200
	경기도	3	2	2	2	2	1	1	1
다자녀 특별공급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3	1	1	1	2	1		
	합 계	6	3	3	3	4	2	1	1

무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및 점수 기재)

	717101	- w -	배 점 기 준	-1.4	
	평점요소	총배 점	기 준	점수	비고
	계	100	-		
	allilid The		4자녀 0상	40	
재녀수	미성년 자녀	40	3자녀	35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도집몽고일 현재 만 20세 미만인 경우만포함
자녀수 (1)	영유아	10	2명 0상	10	
	2571	10	1명	5	•영유이는 입주자모갑몽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3세대 이상	10	•세대주와 작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등재
	세대구성 (2)	10	2세대	5	•직게존속은 배우지의 작계존속을 포함하여 3세대는 작계존속, 바속으로 구성
			세대주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 기간 10년 이상	20	
	무주택기간 (3)	20	세대주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입주자민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작계존 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이어야 하며 , 무주택기간은 세대주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무주택자 기준은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제3형의 규정에때름 (60세 이상의 작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무주택 기간 5년 미만	10	- '+T-74' / LE LT-10BML CH 1 MILL MILOH HOMME (WM VIOH 7 II CHY T-12 FT C OT TT T'YE CO
			10년 이상	20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세대주가 당해 지역에 입주자모집몽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가주한기간
	당해시도 7주 기간(4)	20	1년 이상 ~ 5년 미만	10	(시는 특별시, 광역시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 경기, 인천 지역 전체를당해 시.도로 봄)
			1년 미만	5	

(1) (2); 주민등로등보이나 가존과계회인원으로 회인

(3) : 코토해양부 등 주택소요 저사검색으로 회의

(4) :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은 경우 세대주의 언령(년, 월, 일 계산)이 많은 자

* 상기 7째사항이사실과 다르거나, 위 7째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 돼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구비서류

구분		구 비서 류			
본인 신청 시 (배우자 포함)	공통	• 청약통장 가입확인서 특별공급시청서및 배점/전표(당사 건환주택 비지 및 각 시, 균 , 구 홈페이지에서 다운 발을 수 있으며, 무주택 및 당해 시도 가주기간 등의 기준은 압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임) • 최초 압주자 모집공고일(2011 .04, 07) 현재 무주택 않을 샤타운보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기타 '무주택지원을 압을 하는 서류 등)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초본 추가)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인정보고자 하는 가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압송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피박양 작계주속의 주민등록등보 1통세대주와 삭계준속이 단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성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회안에 1통(아래 해당자에 한함) • 자네의견학 또는 달라가 본인의 구민등록등본에 당자되어 있지 아니한자 • 만 60세 이상의 작계준속이 구인등록등본 이당자되어 있지 아니한자 • 만 60세 이상의 작계준속이 수 30세간인 작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가 아닌 자에 한함 • 미론, 이혼, 사람, 배우자와 본기세대등 최초 압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유무 확인이불가능한자 • 인감증상시 1통(용도 : 주택공급 신청용) • 무주택사업자(집사·정상에 비치) • 인감증상 • 또 유전면하을 또는 여권 • 장애인등록을 나는 2천면하을 또는 여권			
제3자 대리인 산형 시 추가 사항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형자 (신계 준 비속 포함)로 긴주하며 성기 공통 구비 서류 외에 이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단 공항사용도 : 주백·공급신형 위임용 가례가통 - 청약자의 인단 도칭이 날인된 위임장 1통(건토주택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자阳(동포는 국내 자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자의 인당도장, 대리신청자의 도장			

※ 상기 제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등 초본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3개월 이내에 빌헹 분에 한함 [단, 특별 공급(3자녀 이상) 대상자는 7일 이내 빌행 분을 제출하여야함]

※ 특별공급 당첨자중 국토해양부등의 전산검색을 통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분양가성한체 주택에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분양 일정상계약일정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급남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 취소시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최초 압주사모집공고 일2011.04.07) 현재 왕인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수도 레(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최초 압주사모집 공고일 현재 왕인시 지역에 거주는 하고 있도 해당지역에서의 계속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자 포함)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또는 만 20세 이상인자국사에 거주하고 있는 제외동포제외 교내 의 소리 등 이 사람이 되었다면 하는 최초 일주 자연집 공입 함께 용면 시 자연에서의 가주 기간이 1년 마면 인 자는 수도권 가주자자리으로 참가 등. • 신창자리 및 요간 등의 기준은 최초 압우자다리 공입 함께 하며, 면적은 '전송으로 함' • 본 주택에 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창약 신청하는 경우에는 창약 자주의 및 오는 본인, 배우자, 세대원은 각각 창약이 가능하며 중복 당침된 경우 고 중 1주택만 선택하여 개약하여야 함. •분앙가상한제 작용주택에 당첨된 자 또는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도 당 주택에 공급신청할 수 있음. 제당함제한 작용 중이라도 2009.4.1~2012.3.31일 까지 한사적으로 만영주택에 향하며 당첨 이류와 관계없이 참약 충용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참자로 잔산 관리되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함. •신청 가능한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조의 3 제4형에 의한다.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구분	거주구분	순위	신청구분	청약관련예금	접수일자	장소 및 시간	당첨자 발표
		1순위	가점제	•입주지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에 속한 분(창약자 본인, 배우지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포함), 본인 또는 배우지의 세대원 중 만 60세 미만 작계존속(배우자 작계존속 포함)및 작계비속인 세대원전원 주택소유사실 포함]		•인터넷 청약 - 귂민은행 : www.kbstar.com	• 일시: 2011,04,21(목) • 장소: 당사 견본주택 및 내일신문 신문공고 ※ 당참자 명단은 상기 일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 서면통자는 하지 않음. ※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민 80 주	용인시 /수도권 (경기도/ 서울특발시/ - 안천광역시)		추첨제	• 압주 자면진당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 (청약 자본인 , 배우 자주민등록이 분리된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중 만 60세 미만 작계존속배우자 작계존속 포함) 및 작계 바속인 세대원 전원 주택소유사실 포함] -1주택을 소유한세대에 속한 자는 기점제 1순위 창약이 불가하며, 창약산형 시 자동으로 추첨제 1순위 대상자로 접수됨			
			85m² 0 5	• 창악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창약에금 예지금액 이상인분 • 창악에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자로 청약에서금액에 성당하는 금액을에서 또는 납입한 자 • 1980.08.29 이전 국민은행(구 주택은행)의 재령저축에 가입하였거나, 1981.05.22 이전 국민주택청막부금 가입자 중 청약자격 제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몽고일 전일까지 85㎡ 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창약에금으로 전환한 분	2011.04.13 (수)		
			전 주택형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에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청약부금에 가입하여각 주택형에산청 가능한청약에금 에치금액으로 변경 후 산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분(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한힘) •청약자층에 가입하여1순위 자격을 취득한분으로서 납입인당금액이 지역별 청약에금에치금액 이상인 분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교일 전일까지하당 청약에금으로 전환한분 ※ 1순위 청약자한 대상자(단, 2순위로 청약가능) ~2푸택 이상을 소유(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전원의 주택 소유 사실을포함]한 세대에속한 분주택소유에 대한 유의사항 참조)			
턕			가점제	• 2순위 청약자전원		21 12 44 44 11 44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추첨제	•가점제 닉침자는 추침제대상자로 자동 전환됨(모든 청약자 가점제로 청약접수)	2011.04.14 (목)		바랍니다.
			85㎡ 2순위 ^{이하}	• 창약부금에 가입하여6개월이 경박하고 납입안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산청가능한 창약에금 예지금액 이상인 분. • 청약제금에 가입하여6개월이 경박한 지로 청약에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 또는 납입한 자 • 청약자품에 가입하여6개월이 경박하고 매월 약정납입원에 월 납입금액을 6회 이상 불입한 2순위자로서 납입안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산청가능한 창약예금 예지금액 이상인 자 중 최초 압주자로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창약에금으로 전환한 분			
			전 주택형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에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강과한 분 •주택청약종합 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강과되고,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에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상기 1순위자중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			
			잔 턕형	•상기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2011.04.15(금)	• 접수장소 : 국민은행 본 - 지점 09:00 ~ 16:00 • 인터넷점수 : www.kbstar.com 08:00 ~ 17:30	

- 주택 소유 및 당청사실 파탄 대상 : 청인자 보인 배우자(주면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인자 보인 또는 배우자인 같은 주면등록등보에 등자된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된게 비논
- · 창안성 시 유행에는 참하지만을 확인성화되었고 신청가 기자시합인으로 참안성을 받으면 당장에 한당하게 한당 가입 가입 가입 기능하므로 참안신청시 유명하시기 바람 그 기술에 가입 기능하므로 참안신청시 유명하시기 바람 그 기술에 가입 기술에 가입되었다.
- 황막시청은 인터넷 황막이 원칙 여 노역자, 장마유 등을 제약하고는 은행 청구에서의 창약잡수는 불기합 [노역자, 장마유 청구청약 가능시간 : 09:00~16:00. 단, 창위통장가입은행에서만 가능하며 3순약잡수는 국고문행 본, 저집 및 www.kbdar.com 에서 가능
- 가장제 개요가정함복, 잠수, 형목별 팬던가준 및 유의사항등, 주택소유여부 팬단가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가장제 및 주택소유관련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공급받을 수 있는 주	택의 전용면적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용인·기타 수도권		
85m² 0k	il-	300년원, 600년원	250만원, 400만원	200만원, 300만원		
102㎡ 초과 ~ 1	35m² 0 ō⊦	1,000만원	700 만원	400 만원		
135m² 초	과	1,500만원	1,000만원	500 만원		

■ 1순위 청약제한 대상

■청약관련예금 변경(전환시 경과기간 및 요건(전용면적 기준)

• 85m² 초과 102m² 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관련예금 기업자의 경우 85m² 이하 민영주택청약신청이 가능함.

- 왕오베금청악부드은 남요인정금액이 자연별 85㎡ 이하 황오에금 여자금액 이상 남요한분에 한할께 가입되여 가입되 (청약자축에서 창약 에글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 이미 신황가능 전용만족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실로부터 2년 경과사미다 횟수에 관계값이 신황가능 전용면적 변경이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한행 자약별 창환에금 여자
- 94,8,15 이전 청약자축에 기입한 제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당고 전일까지 85m*이하 창위제금으로 차액을 추가 예치하고 전환하면 제1순위 자격으로 청위이 기능한
- 직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최초 입주지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큰 주택규모로변경한 자 : 사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자는변경 후 전용면적으로만 산장가능한, 1년이만인 자는 변경 전 전용면적으로만 산장가능) 창망자축에서 창악에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입주자모집당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산장가능 주변청약종합자축 기압자 : 최초 창약 산장전까지 산청가능 전용면적으로 산택하여야 하며, 산청가능 전용면적을 산택한 이후에는 2년이 강대하여야 산청이 가능한주택규모로 변경이 가능한

- 6그 / 10 시 년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의거 일반공급서대수를 기준으로 칭약순위(1, 2순위)에 따라 전용면적 85㎡이하의 75%, 85㎡초과에 50%를 기점제에 우선 배정함. 가점점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황지를 산정함
- 기점제의 공급기준

구분	면적구분	공급기준
	전용면적 85m² 이하	•무주택세대에 속한 지에게 기점점수산정기준표 참고)가 높은 순으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우선 공급함. [나머지 25%는 추침제를 적용함]
たり! フロナセル	전용면적 85㎡ 초과	•무주택세대에 속한 지에게 기점점수(신정기준표 참고)가 높은 순으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우선 공급함. [나머지 50%는 추첨제를 적용함]
청약기점제	공통사항	•각 주백형별로 신청 가능한 창악에급최초 인주 자모집당고 전일까지 창악자속에서 창악에급으로 전환한 분 포함이나 창악부근에 기입하여 1, 2순위를 취득한 자. •가장제 신청분 중 가점화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르며 가점제를 작용하는 주택의 압주지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산청절차 없이 추천제를 작용하는 주택의 추천 대상자에 포함하여 압주지를 선정함.

· 기섬제 석용기순 	신청자격
무주택/만 작용/1준	(1) 압주자모집당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압주자자축 기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작계존속배우자의 작계존속을 포함한다. 작게 바음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자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 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하당하나 이래 소형 · 자가주택 소유자를 우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가 하며, 입주자자축 기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전인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가 한다. (2) 압주자모당공고일 현재 60㎡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 · 자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 소유소형 · 자가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그 주택을 계속하여 소유한 기간과 처분 후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지로서 주택가공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 · 자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들 10년 이상 계속 소유소형 · 자가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그 주택을 계속하여 소유한 기간과 처분 후 계속하여 수유한 기간과 처분 후 계속하여 수유한 기간과 처분 후 계속하여 수유한 기간과 처분 후 계속하여 소유한 기간과 처분 후 계속하여 수유한 기간과 처분 후 계속하여 수유한 기간과 처분 후 계속하여 가장 대한지를 함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로서 주택공급에관한 기적 세계 12조에 따라 경우에 따라 시원 기간 20년 경우 기본 기본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 · 자가주택의 주택가격으로 보다. 이 경우 소형 · 자가주택의 시원 기계 20년 기본 기반 20년 기본 기간 기반
부앙가족 인정기준	(1) 부양기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자축 기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서대원배우자, 작계존속배우자의 작계존속을 포함한다, 작계 비속미혼인 자녀로 현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자축 기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경우 주민등록이 불리된 배우자및 배우자자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기존으로 한다. (2) 입주자자축 기업자의 작계존속을 포함한다운 입주자자축 기업자 대존 숙배우자의 작계존속을 포함한다여 주민등록이 불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자축 기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부양기쪽으로 본다. (3) 입주자자축 기업자의 30세 이상인 작계 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자축 기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기쪽으로 본다.
입주 <i>자</i> 주축 기입기간	(1) 압주자단당고일 현재 압주자처축 기입지의 기입기만을 기준으로 하며 압주자처속의 종류, 금액, 기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 도 최초 기입일을 기준으로 기입기만을 신청한다. (2) 압주자처축 기입기만에 대한 기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 부여함

• 가점제 적용 세부기준

일반기준	•가점제 점수는 이내의 '기점점수 산정기준표'에 따른 가점형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에서 이내의 '감점 산정기준'에 따른 감점형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를 차찬하여 산정한다. • 감점 산정기준'에 따른 감점형목의 정수를 합한 점수가 "가점점수산정기준표"에 따른 가점형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가점제 점수는 O점으로산정한다.
------	---

• 기점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가점	가점구분	점수	가점 구 분	점 수
		1년 마만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0상 ~ 2년 미만	4	9년 0상 ~ 10년 미만	20
		2년 0상 ~ 3년 미만	6	10년 0상 ~ 11년 미만	22
0 PT 5 - PI	20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① 무주택기간	32	4년 0상 ~ 5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6년 0상 ~ 7년 미만	14	14년 0상 ~ 15년 미만	30
		7년 0상 ~ 8년 미만	16	15년 0상	32
		0명 (7입자 본인)	5	4명	25
	25	1명	10	5명	30
② 부앙기존수 35 2명 15 3명 20	35	2명	15	6명 이상	35
		6월 미만	1	8년 0상 ~ 9년 미만	10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0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0상 ~ 3년 미만	4	11년 0상 ~ 12년 미만	13
③ 입주자저축	17	3년 0상 ~ 4년 미만	5	12년 0상 ~ 13년 미만	14
		4년 0상 ~ 5년 미만	6	13년 0상 ~ 14년 미만	15
		5년 0상 ~ 6년 미만	7	14년 0상 ~ 15년 미만	16
		6년 0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0상 ~ 8년 미만	9		
총점			84점 만점 기준		
ж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2조 제5형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	택을 소유한세대에 속한	한 자는 제1순위에서 기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한다.	
		보인 창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강점점수	(N매의 '한전 사전 7점	" 차고)	

본인 청약기점 점수 = ① + ② + ③ – 감점점수(0 래의 "감점 산정기준" 참고)

	감정항목				
구분	기준	소유주택수	감점점수		
		2호 또는 2세대	-5		
1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제 ③항 제6호에 때른 60세 이상의 작계존속(배우자의 작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소유하는주택이 2호 또는 2세대 이상인 경우	3호 또는 3세대	-10		
		-			
		2호 또는 2세대	-10		
2	•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 11조의 2 제 ①항 제2호 또는 제12조 제 ①항 제2호에 따라 제2순위로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3호 또는 3세대	-15		
		-			

■ 주택소요에 과하 유이시한

· 주택사용이라 전사전생절과 부덕자로 편명되자가 판명사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야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가간시행주체가 소명 요청을 된 한 날로부터 10일나에 주택소유이라 확인법 및 판장기준을 참고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당한 사유없이 동기한 내에스병자료를 제출하지 이나할 경우 당첨 및 개약을 취소한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1. 검색대상: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비속에 한함) 전원,

2.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3.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및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있는 주택이포함됨.

4.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분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5.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6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경우 지분 소유자 전웨이주택소유자로 인정됨

7.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시업주제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자분을 처분한경우
-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자연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자면에 가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가주한 것을 상속인이 가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자면으로 이주한 경우
- ① 사용승인후 20년 이상 경화된 단독주택 ② 85㎡ 이하의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때른 최초 등록 가준자에 건축되어 주택으로서 작게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개인시합자가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시합주체가 정부사택의 일환으로 근로지에게 공급할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을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을 소유한 경우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광방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않는 때가 또는 주택이 열실되었거나 주택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이를 열실사가거나 살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광부를 장리한 경우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8. 소형, 저가주택 1호를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의특례(주택공급에관한규칙 별표 제 1호 기목 2)

- · 입주자 모집 균고일 현재 전용면적 60m² 이하이며, 주택과(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1 주택이하 소형, 자기주택 이라 한다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촛축하는 분은 60m² 초과 면명주택 또는 만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찾았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 자기주택 보유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연정형(장기간보유, 특례)
 - (현재 사형 '자가주택 사오자'인주자'먼진공과인 '가주로' 사형 '자가주택' 1호 또는 1세대 마음 10년 이상 개소하여 보오한 경우 : 현재 사형 '자가주택' 10년 미만 보요한경우 # 틸레에 해당'(팀(때만서 '오주택(X)이면 좋저 모주택()기온 모현()기온 모현(기온)온)
 - (현재, 무주택자)중전에 소청 , 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투 기간을 함해 10년 이상 경막한 경우 : 해당 소형 , 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 주택공시가격 적용가준
- 압주 자연경공교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제 16조 또는 제 17조에 따라 광시된 가격 (이하 "주택광시가격"이라 한다) 중 압주자 모집공교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광시된주택광시 가격에 따르되 압주 자모집공교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광시된주택광시 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광시 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단, 가점제 사행(2007, 08, 31)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광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청약시 유의시항

• 창악 산청 시 창악자 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산창자 기재사형만으로 창악산 창을 받으며 당참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 로표등(초본・가족관계등록부 등 관문서류를 장구하여주택공급 산청내용과 창악자격을 대조한 후 창완신청내용과 창악자격의 알치할 경우에 개위체결이 가능하므로 창안신청시 유의하시기 비립니다.

■ 신청접수방법

- 충혈 , 충별 ,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최초 압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 지역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재이하 "당해지역가주자")와수도권 가주자사물특별시, 인천맹역시, 강기도(최초 압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 지역에서의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자 포함)를 구분하여청약순 위별로 같은 날째에 거주지역을 구분 하여 접수하며, 산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당급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치순위 청약접수를 받음.(단, 3순위까지 청약접수결과 신청자수가 일반당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창안순 위별로 앞[평급세대수의 100%를 당해지역 가주자에게우선 공급하며 동일순위내에서 당해지역 가주자 신청 잡수결과 마탈된 세대는 수도권 가주자 공급세대에 포함하여 공급하며, 수도권 가주자 신청잡수결과 마탈시에는 진여물량을 차순위에게 공급함, (차순위 공급 방식은 산순위와 동일함)

- 1순위자 중 가전체 대상자 및 2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전체로 청약전수되며 가전체 낙청자는 별도 사장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화
- 1순위자 중 추첨에 대강자에 한해 추첨제로 창의점수 ※ 창의자는 입주자선정방법 [기점제 / 추첨제]산태이 불가하며, 창의통 장 순위와 청약신청시 입력한 주택소유 현황 등에 따라 자동분류잡수됨 .
- 3수위 : 청약시청자 전원 추천제로 청약점수

• 청약시청 전수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창단자가 인터넷 창약채용을 잘못 압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적 당첨자에해당되므로 관련 증방서류 등을 통해 창약채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압력하여야 함.

구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통장을 기업하신 분	국민은행舊주택은행포함에 청약통장을 기입하신 분
0용대상	청약통장 기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으로서 •1,2순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순위가 발생한 팀	· 3순위 : 국민은행 인터넷뱅킹계좌에 3순위 청약산청금 이상의 진액이 있으신 분(1회 이체한도가청약산청금 이상이어야 함)
0용방법 및 절차	청약통장 기입은행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접속 ⇒인터넷칭약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칭약 ⇒ 인터넷칭약

구 분	구비사항
본 인 (배우자 포함) 신청 시	•주택평급산청세1,2순위 : 청약통장기업은행 비치,3순위 : 국민은행 영업점 비치)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통장(1,2순위 지에 현험) •예금인정(1,2순위 신청지에 한함) 또는 서명 •주민등록정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국내가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 걸 배우자 대민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동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 당본 1 통 / 분리세대 구성시 : 기족관계증병서 1통) •청약 신청금(3순위 신청자에 한함)
제3자 대리 신청시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사형자식계 준·비속 포함로 간뚜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이래의 서류를 추기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산형용) 단, 약표인의 경우 본국 관공사의 증명(사형인동사)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정자의동포 또는 약표인이 인동된 사령으로 공급산형 위임사는 제출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양식은 산형접수 장소 비치) - 대리 산형자의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가소 신교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등· 초본은 최초 입주 자모집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 분에 한함.
- ※ 국도해양부등의 전산감식을 통하여 부적격자로 맨형된 자는분양일장상 게약일이후라도 아빠트 당첨 및 게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게약금 납입됐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자 자급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 취소세자는 예비당참자에게 우선 공급함.
- ※ 신청자의 착오로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당사에서는 책임자지 않음.

3순위 청약 신청금				
구분	청약신청금	신청금납부방법		
전 주택형	일백만원	수도권지역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 대리整분시 취가리시항 :상기 환분시구비사류 이외에 창의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창악신청금 환분/임용)가 참부된 위임장 1통,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사형인동서)이나 이에 관한 공장증서, 인가도장(제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인증된 사형으로 환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3순위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 역명업일 이후(2011.04.22) 평일 09:00 ~ 16:00 (단,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 환불장소 : 창약잡수한 국민은행 본 지점(단, 인터넷 창약자 및 본인의 지정계좌로 이제신청한분은 당첨자 발표 익 영업일에 지동 이체됨)에서 구비서류 제출 후 환불받으시기 바라옵고, 건분주택에서는 일체 환불 하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 : 주택공급신형 접수(영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새본 추가제출), 주민등록증, 신형시 사용한 인장 또는 본인 배우자 서형(서명으로 신형한 자가 훤불 시에 한함)
- 제3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3순위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3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시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청약 접수한 국민은행본,지점에서 흰불받아 별도로 계약 체결하여야 함.

•본 서비스는 청약신 창자의 편의도 모를 위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이므로 당첨자 발표장소등에서 당첨여부를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쿠	분	금융결제원(국민은행 외의 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에 한함)	국민은행(국민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에 한함)	
0용기간		2011.04.21 ~ 2011.04.30 (10일간)		
	인터넷	금융 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잡속 ⇒ 당첨자 사실조회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부동산 → 창약 → 당첨 확인	
이용방법 및 절차	ARS	1 전국금융공동 망(1369) (서비스코드 : 5#)	☎ 국민은행 콜센터(1588-9999)(서비스코드 : 913)	
	휴대폰 문자 서비스	주택·청약 신청시·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중 당첨자 201	1.04.21 (08:30)/ 제공사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정 방법
특별공급	・당사 견론주택에서 참약자입회하에 각 주택형별로 공개추천에 의해 입주지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일반공급당천자와 함께 금융결제원에서 무작위로 결정한 ・특별공급 산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마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특별공급은 여비당찬자는 별도로 선정하지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
일반당급 (1,2,3순위)	● 금융결제원 압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기업은행 구분없이 1,2순위는 전용면적다별 기점제 및 추첨제 작용 비율에 따라 압주지를 선정하고, 3순위는 추천제로 압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전용면 작1별 기장제 및 추천제 작용비율은 대급과 같으며, 1,2순위 창외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기점제 (기점수 가능은 순)로 압주자 선정하고, 기점제 낙천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가주지역 추천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압주자를 재전형 한다. 1순위자 중 1주택 소유 자는 청약 잡수시 자동으로 1순위 추천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1순위 기점제 낙천자와 함께 추첨제로 압주자 선정함)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 공급세대수의 75%를 기점제로, 나머지 25%를 추천제로 압주자 선정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 공급세대수의 50%를 가접제로, 나머지 50%를 추천제로 압주자 선정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 공급세대수의 50%를 가접제로, 나머지 50%를 추천제로 압주자 선정 ● 조용면적 85㎡ 소화 : 일반 공급세대수의 50%를 가접제로, 나머지 50%를 추천제로 압주자 선정 ● 조용면적 85㎡ 소화 : 일반 공급세대수의 50%를 가접제로, 나머지 50%를 추천제로 압주자 선정 ● 조용면적 85㎡ 소화 : 일반 공급세대수의 50%를 가접제로, 나머지 50%를 추천제로 압주자 선정 ● 조용면적 85㎡ 소화 : 일반 공급세대수의 모형 1층 경쟁이 있을 경우 압주자 모근당과 일한채 8인시 주택건설되면 1년 이상 가주 신청자가 우선하며, 압주자 선정시선수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를 초과할경우 차순위접수분은 압주자 및 예비압주자 전쟁(대상에서 제외될수 있음. ● 압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20%까지 추천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천자를 신청(3순위까지 25에 선생자수가 일반 공급세대수의 120%에 마달하는 경우 낙천자 모두를 예방당하지로 선정)하며, 선순위 당천자 중 미계약 또는 개2취소자 발생시 예방당참자 순반에 따라 압주자를 선정하고, 최초로 예비압주자를 압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천에 의창/인사를 표시한 예비압주자에 대하여 추천의 방법으로 도・호수를 배정함, (추천에 참가하여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압주자를 개막이라와 상만없이 당천자 발표 정상에 별도 게시함 ● 예비압주자는 개막이라와 상만없이 당천자로 발표 장상에 별도 게시함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 얘니당·참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배장주·참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관계없이 당참자로 관리탐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제당점 제한 등이 작용될
- ※ 정도당 참자 계약종 로 이후 미계약세대 박색시 예비당 참지에게 수밖에 따라 우서 공급하고 진여세대에 대하여 자격제하 없이 일의 부양학

구분	금융기관	계 좌 번 호	예 금 주
계약금	국민은행	503201-01-105440	한국자산신탁
중도금 및 잔금	국민은행	503201-01-105440	한국자산신탁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아니한 분완대금은 안정하지 않으며,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완보증 대시에 해당되지 않을. •자정된 중도금 및 자금 납부일에 상기 계좌로 무통장 임금하여야 하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을. •무통 장임금 사에는 계환자명 또는 동·호수를 펼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시 구비사항	계약시권시항				
구분	구 비사항				
공 통	주택공급신청접수증 및영수증 게임급(가능한 한 수도권 소재 금융기관이발행한 자기합수표 1정으로 준비하시기 비합) 게임자의인임도 장및 인감증 명서 (용도 : 아파트 게임용) 1통 본인 확인 및 신청자격확인서류(가주지역, 가증항목별 압력내용확인서류등) - 전인 통력증 또는 운전면하증 - 전인 통력증 · 초본 1통 - 배우 자의 주민 등록등본 1통 (배우 자와 보리세대의 경우에 한함) - 신청자 및 배우 자의 식계준속의 가중관계관명서 1통, 초본 1통 (배우 자 작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분에 한함) - 재의동교는 국내가소신교 증사본 1부 및 국내가소신실 증명서 1통 - 역단인은 역구인등록을 사본 1부 및 약단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후인근에 경영성 1통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하여 혼인하여 본인가입을 무주택기원에 신청한분)				
부적격 통보를받은 자 (당첩자 중 해당자)	•부작화로 통보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서류 - 건축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포함) - 무허기간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자기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사기적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사항	•본인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유자, 작계 존·비속 포함로 긴주하며 상기 서류 약에 다음의 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빠트계약위임용) 퉁 - 계약자인암도장 - 계약자의 안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건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 상기 제 증명 서류는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단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함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사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함)
- ※ 2005,07,01 주민등록합시행규칙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발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선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축하여 발급 받으시기 배워니다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경우 당첨권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함
- 무주택기간, 부양기족수, 주택 소유현황 등 청약기점 항목을 하위 또는 책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경우
- 1순위 당첨자 중 기점제당첨자가 최초 입주지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지로 판명되거나, 추첨제 당첨자가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로 판명될 경우
- 특별공급당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당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사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 유어부, 및 과거 당착사실 유무 패단시 당착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전원이 주택소유 및 당첨 사실을 포함함
- •창의전수일자와관계없이 오주자 모쪼굕고상 당첨자 발표일이 오삭인 주택에 당첨시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 했고라 동일한 청의관련 예금으로 청약 소청하여 당첨된경우에 한학)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시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 귀인 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귀인등록 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함
- 꾸민등 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기인하거나 기입한자의 청약관련 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 및 계약시에는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 •디자녀 특별공급당참자 중 디음에 해당될 경우 당첨을 취소하고 창약통 장재사용이 불가하며, 계약은 취소하고 당첨자로 관리함.
- ① 개막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및 계약체결 후라도 주택소유 여부 및 무주택 기간이 사실막 다르거나분양가성한제 주택에 당첨되어 부적적자로 통보된 이후 10일간의 소명기간인에 소명하지못할 경우 당첨취소와함께 공급계약이취소됨)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사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이파트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여야 합니다.
- •당해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당첨자로 전신판리되며, 향후 청약신청시 신청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내 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으로 변경될 수있습니다. •사업주체에서 사업 승인(변경 승인 포함)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한 시험에 대해서는 변경될 수있습니다.
- •부적격당참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경우에 한하여계약체결 함.
- 압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압주 및 전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의 계약
- 불이행으로 인해 시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부담함
- •입주자사전방문 : 입주 전에 입주자가사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함.
- 견보주택에서 확인이 관련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사설물(공용계단 자하주차장, 승강기의용량, 탑승위치 등)등과 주택형별 세대 평면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합니다.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이 각각 1순위로 신청하여 중복 당첨된 경우에는 1개의 주택에 대하여 계약체결이 가능 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27조(주택의 공급계약)를 주용한

•대출관련, 서부내용은 건환주택에서 별도공지 및인내 예정이며, 시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 도가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

■ 인주 예정일 : 2013년 11월

• 입주 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할 예정임 .

■ 인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 제6형에 의거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일 약 2개월 이전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추후 통보함) 에 사전방문 할수 있도록 항.
- 사전점검대상 : 도장공사, 돼!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보내보기시석

- A1불립(1단지) 관리사무소(1개) 경로당(1개) 무고(1개) 골프연소당(1개) 휘티스(1개) 코인세탁실(1개) 게스트룅(1개) 주민공동시업(사무실(1개) 회의실(1개) 멀티롱(1개)
- A2블립(2단지) 관리사무소(1개) 경로당(1개) 보유시설(1개) 무고(1개) 골프연습장(1개) 휘티니스(1개) 코인세탁실(1개) 거스트롱(1개) 주민공동시설(사무실(1개) 노래방(3개)
- 43블랙(3단지) 관리사무소(개), 경로당(1개), 보육시설(1개), 문고(1개), 골프연습장(1개), 휘트니스(1개), 코인세탁실(1개), 게스트롱(1개), 주민공동사설(사무실(1개), 동호회실(2개)

■ 기타 유의시항

- 청악자취에서 청악에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악에금 예치금액을 중전보다 작은 규모의 예지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산촌을 회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압주자 모집공고전일까지 변경한 지혜 현학여 청악이 가능하며, 향후 다른 주택을 산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 주시기 바람.
- 인주자로 선정((3순위 당첨자 포함)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견주학
- 예비당참지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공급을 산청하여 일주자로 선정된경우, 일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가간 만료 전에 예비일주자로 선정된주택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이들 주택 중에서 산택하여 계약을체결할 수 있고, 만자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 당치 및 계약체결 호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역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당해 주택은 실입주지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사의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잘서를 어지럽힐 사에는 관련법에 따라 채벌 반게 됨.
- 주택공급에 관한다칭 개정(2002.9.3)으로 주택 수요 부적 결자로 판면 되어 당취 및 계약이 취소될 결위에도 첫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주택공급신청사의 〈 주택형/또는 〈형〉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 압주자 모집 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신청사상 단말기로 인지된 시항과 본인 청약내용을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사방법을 종전의 평향대신 넓이표시법정단위인 제곱미터(m)로 표가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평형 환신방법 : 형별면적(m) × 0.3025 또는 형별면적(m) ÷ 3.3058]
-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의거한 경미한 시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에게 통보처리 함.
- 분양시에제시된 조감도, 세대병면도, 면접, 차수 등 각종 내용이나 살해관련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산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광사 진행 중 설계변경될 수 있음.
- 용인 행정타운 두산위브 A1, A2, A3블랙 내 및 그 외 타 자격의 타사 또는 당사 분왕이파트의 미감시앙,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정과본 이파트를 비교하여 견론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계 추가적인 미감시앙 및 부대편의시설, 조정의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수 없으므로타사 분왕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평면및 주택형별 특성에 따라 청소형 수전이 설치되지않는 발코니가있을 수 있으며, 수전이 마설치되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발코니로 계획됨.
- •보행주출입구에 위치한 계단, 장애자 램프, 외부 엘리베이터는 배치 및 형태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대피공간의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 측량결에 따라 일부 주동의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수 있으며, 그에 따라 주민공동사설, 자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각 주동의코아(엘리베이터 / 계단실 / 복도)형태는 주동타압에 따라 다른 형태로계획되어 있어 채광 및 복도크기 등의 조건이 상이형을 언지함.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사공될수 있으며 외부사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배지상기계,전기실급배기구, DA, 정화조 및 쓰레기분리수가함 안접세대에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설레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탁실 단차이는 세탁기 용량 및 크기를 고려하여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으며 , 세탁실의경우 결로 및 동파 방자를 위해 벽체의 두께가 두까워질수 있음 .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살펴변경에 해당하는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시절들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시압승인도면 이외의 시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시압주체의 수릭 하에 이에 성용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시압승인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장구하여
- 각 실별 청틀형태 및 크기, 생산업체, 개폐방식 및 방향 , 유리 색상 , 설치위치 , 난간 높이 등은 본 시공시변경될 수 있음 .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의 구성 및 수량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키탈로그와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비람.
- 일부 조명기구의 구성 및 수량은 가능성을 고려하여 주택형별에 따라 약기의 차이가 있음
- •인·하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사용성 개선 등을 위해 구방가구및 알반가구, 수납공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분박이 자료(신박장 분박이 장 욕실장 주방가구)와 전해져 있는 벽 바닥 천정의 최종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음
- 우물천장의 크기 및 위치, 감이는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생부세대 비활장시 하부 찬정부위 추가 단얼공사로 인해 우물천장 등 찬정부분이 변경(위치, 감이, 형태 등/될 수 있음 .
- 경보 주택에 시공되 제품은 자재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산제품 개밥 시에 동질 동기의 티사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장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에 비디오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분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발코니에설치되는 난간 및 사시의 형태 사양은 가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사공 시 인·허가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시 선활통 및 드레인 등의 위치, 개소 등이 변경 시공되어질 수 있고, 우천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또한 확장시 산활동 배수관을 기리기 위한 백체가일부 돌출되어설치됨.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추가 설치 시 벽두께, 천정형태, 구조체 및 인테리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직접 외기에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을 확인함.
- 확장형의 세탁실에 환기유니트가 설치되며 환기사스템에 따른 입면 창호 전등 환기구 위치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패밀리 확장형 선택시 조명제어 및 현란도아벨 등을 포함한 황네트워크 사스템 실내환기사스템, 주자관제사스템, 보일러, 수도계량기, 카스계량기 등은 별도 분리되지 않으며, 분할검침이 불가함, • 각종 안배물(카탈로그, 공급 간지 등)의 컴퓨터그에픽 및 형보물(신문)광고 등)성의 미감재규격, 재질, 미감재, 색상 등) 및 조감도 (중앙 광장, 조경, 조경 등의 설치위치 및 개수, 재품의 모양 등) 그리고 견혼주택배 전시모형(간축물, 조경, 시설물, 단위세대, 전변도로, 근란공원, 완충녹지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현장여건 및 실시계획 인기인 내용에 따라 실제 시공과 다를 수 있음
- 금회 공급주택의 공용부위실내 마감채 중 미묘기 사항, 외부환경디자인 등 팜플렛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 내용은 사업계획승인 도면에 따라 사공됨.
- •매수자의 이해를돌기위해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가탈로그 및 각종, 황보물에 표현된Dspay용품(참대, 의자, 탁자 등 기타)은 분양대상에 포함되지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강계획및 식재, 사설물, 주민운동사설, 수강시설, 포장, 주변환경, 부지 고저차 등은 살제 시공시 변경될 있음.
- 각종 홍보유인물에 표시된주민공동사설 면적 및 조경면적은 변경될 수 있음.
-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차이가있을 수 있으며분양기를 기준으로 정산함.
- 시공 중 천재자변이나 문화재발굴이 필요한 유적이발굴될 시 발굴 문화재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으로 인하여 입주가 지연될 수 있음 .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경비는 대출신청자 본인 부당이며, 금융거래난용품량자(산용관리자)등 계약자 본인의 사명에 의한 대출이 불가한 분은 납부 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작접 중도금(전금)을 납부하여야 함.
- 단지 내 부대복리 시설의 규모, 종류 및 내부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와 인테리어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및 근린생활시설은 입주자및 임차인의 목적에 따라본 홍보물과 상이하게 운영될 수 있음.
- 근린생활사설은 입주민의 공동소유가 이닌 별도 분양사설로 임차인의목적에 따라상이하게 운영될 수 있음.
- 부대복리사설의내부계획(실별 위치변경, 다른 사설로의 통합 , 동선 , 압면 형태 등은 인· 하가과정이나 본 사공시변경될 수 있음.
- •단지에설치되어지는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사용과 운영화인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가칭) 주면자차합의 가에서 결정하여 운영되어자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내부 사설물은 입주민들이 지체적으로 설치, 관리, 운영을 원칙으로 함.
- •지하주차장은 단지별로 전체통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배치, 동별 주차 배분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위치 및 통행동산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현재의 배치현황을 충분하인지하시기 바람.
- 단지별계획된 부대복리사설(어린이놀이터 / 주민운동사설 등)로 인해 인근 해당 동 및 세대의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음.
- 당해 주택의 압주 후 주자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는 성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이나되며, 주저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되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시무소의 지도 감독에 따라야 함.
- 어린이들이터, 주민공동사설 내 놀이기구및 체력단련기구의향태, 위치 및 개수는 카탈로그동 인쇄물 및 조감도, 모형도 등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계획 및 설계상의 높이 차이로 인하여 입주 시에 사다리차의 진출입 및 이용에 제한이 있으며,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경우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함.
- 아파트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 및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는 인·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결정 또는 변경 될 수 있음.
- 건물 외관 및 축력, 일부세대 발코니등에 장식물이나 당사 브랜드용 LED 광고 및 조명이 설치될수 있습니다.
- û면 채뿔화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왘탑 , 쟤퉁 , 축벽 , 동총인구 , 경비실 , 문주 , 부대복 라시설 , 압면 , AFT 측벽문앙 등의 다자인의 형태 및 색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 위성 언테나 , 피로침 등의 사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옥상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출입이 금지되고, 출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와 사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계약세대가 속한 동 층 및 형에 따라 일자권 조망권 환경권 및 도로소음 등이 다릅 수 있으며 미감지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보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람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하주자생캠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치로 등에 인접한자총부 세대는 소음 및 차량 전조등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각동의 자총부 및 고총부세대는 기로등 및 이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 ・남촉으로 삼가 대촌간 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공사예장이며, 완평 후 소음 등으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A1블럭 103동 약 70m 남촉으로 삼가 대촌간 국도 대체 우회도로(예정)및 A3블럭 303 동 70m북촉으로 삼기억예정)의 경전철 선로가 위치합)
- 새압부지 주변 건축물 및 건축물의신축ㆍ개축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창해를 받을 수 있으며 , 이는 관할 하/전자에게 문의하시기 버립니다.
- •용인경전철은 용인시와 용인경전철주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개통시기 미정임.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시항은 최종 측량성과도 및 인·허가 과정에 따라 도로 폭, 선형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도로 및 공원 등 주변개발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각 해당기관에 별도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 인접 도로(통행자랑소음) 및 통로(자랑,보행 포함), 보행계단등으로 사생활권이 참배될 수 있으며, 대관합의시 필요에따라 단지 주변에 방음 벽 방음 둑 등의 사설이 설치될 수 있어 방음 벽,방음 둑에 의해 조망 권등 환경권이 참배될 수 있음.
- •사업부지 외공공공지, 경관녹지, 체육공원, 어린이 공원, 도로 등 해당 도시계획시설은 실시계획인 하가 내용에따라 추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재 카탈로그 및 모형에 표현된 계획인은 이해를돕기 위한 예시되임.
- A2블럭과 A3블럭 사이의 삼가천은 건천으로서 우기시를 제외하고 건천임.
- •본 이파트의 대지 경계선 밖 협오사설과의 가라는 4번자의 이뤄를 돕기위해 개략적으로 측정한 것으로 실제와는 상이할 수 있으니 ,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신 후 개약 채절하시기 바람 (101동 남쪽으로약 200m, 102동 서쪽으로약 150m, 103동 남쪽으로약 100m가리에 송전함이 약차하고 있으며 , 101동 남쪽으로 약 100m, 102동 남쪽으로약 105m, 103동 남서쪽으로 약 120m, 205동 남서쪽으로 약 160m, 206동 남축으로 약 110m, 303동 동축으로 약 40m 개리에분묘가 위치하고 있음.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계약자 책임임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제9조에 와가 공동주택 실내공/질 측정결과를 압주 3 일전부터 60 일간 압주민의 확인이 용이한곳에 공고 예정임.
- •주택성등등급(A1블랙: 92점, A2블랙: 91점, A3블랙: 93점(등은 건물 완공 후 최종심사에서 인증여부 및 인증등급이 달라질 수 있음,
- •취사 및 난방용도시기스 사용을 위해 지역 정압기를 도시기스 공급지와 협의하여 단지 내 일정 장소에 설치할 수 있음.
- 단지 미을명칭은 용인문화원에 의뢰한 결과, 하현미을이라 칭함.
- 입주자모집살태 조사확인 후 ,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외국인이국내 토지를 취득할경우.
- -국내 가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 유입에 따른 외국환/궤법상 부동산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 투자측인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신고,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추득신고를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마이너소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 압주자가 마이너소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 함으로서 압주 후 소음,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압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함수 있으나, 이에 때른 법적인책임은 사업주체 및 사공사와 무관함.
- •용인시의 주택간설시업승인(제2008-8,9,10호)조건에 의하여 준공에 필요한 인·허가 상의 기부체납행위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대한 주택보증주식회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제 59조에 따름.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시형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에 문의하여 주시기비람.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약편에 따라 위약금은 공제함
- •단지 내 전/ 사용을 위해 한전에서 공급하는 지중용 PDA스위치 및 PDA변입기가 조경부분에 설치됨.
- •본 분양목적물에 대하여 한국자산신탁주), 두산중공업(주), (주)오피에이 등 간에 2009.11.04일자로 관리형토자신탁계약이 체결 되어 있음.
- •한국자산년탁주와 두산중공업(주), 위탁자(주)오피에이 간에 체결한 관리형 토지스토계약에 근거하여, 분양계약과 관련 된 양체의 의류분양계약해제 / 해지시분양대금 변환 채무이행, 소유권이전관업 묶는 (주)오피에이가 책임지고, 하자보수는 두산중공업(주)이 책임을 지며 한국자산년탁주에게는 책임이 없음.
- •신탁법 및 지본사장과 금융투자업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자 ㈜오파에이, 수탁자 한국자산사택주), 사공사 두산중공업주환에 체결한 관리형 도자신탁제약을 왔던으로 하는 위탁자 변경에 본 분양계약 체결화 동시에 "올'은 동의한 것으로 하며, 관련 절차를 진행함에있어 "올'은 "라" 및 '병'에게 해당업무 및
- 의사표시권한 일체를 위임한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함.

- •103동 북쪽 안전대지 경제선에보강토 용벽이 길이 약 68m, 높이 1~3m로 살치될 예정이며 102동과 103동 사이 남쪽도 로경제선 약 150m 구간에 콘크리트용벽 1~5m, 보강토 용벽 높이 1~3m로 살치될 예정이다.
- 101동과 102동 사이 어린이 놀이터가 있음.
- •남쪽으로 11m도로와 부여산, 어린이공원, 완충녹지, 경관녹지 지역이 접해있음.
- 주출입구에서 동남쪽으로 약 350m 인근에 삼기초등학교가 위치함. • 대지 사쪾으로 공공공 지와 인접하여 블록형 단독주 택제예정 와 접해 있음 .
- •남측 11m도로 레벨이 단지보다 높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 및 이간 처랑이동에 의한 서대 내 눈부심 이발생활 수 있음.
- 101동 저층세대는 근린생활시설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 냄새가 발생할 수 있음.
- 101 102 103동의 충고는 2,900mm(천정고 2,350mm)임
- •A1블랙 북측에는 노후화된 주택들이 산재되어 있으니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변에 위치하므로 완충녹지, 왕벽등이 설치되어 저층세대의 시이를 기릴 수 있습니다.
- A1블럭 남측으로 약 2~8m높이의 콘크리트 및 보강토 옹벽이 150m기량 설치됩니다.

- 202동 동측에 11m 도로와 접하는 대지경계선에 조경석이 길이 약 20m, 높이 1~2m로 설치될 예정임.
- 202동과 203동 사이, 206동과 207동 사이 어린이 놀이터가 계획되어있음
- •신청부지 동쪽 18m 하천변으로 자전거 도로가 있으며, 북동측 11m도로와 남측 18.5m~21.5m도로와 연결예정임.
- 부출입구에서 남동쪽으로 약 230m인근에 삼가초등학교가 위치함.
- 대지 북측에 어린이 공원이 접해 있음.
- 단지 동측에 남쪽 부여산에서도심으로 흐르는 18m 하천이 있음.
- 단지 내에서 히천변으로직접 진출입하는 진입로는 없음.
- •북측 테니스장 옆에 정압시설(600세대 이상 의무설치)설치 예정임.
- •부출입구 차량동선으로 인하여 204동 일부세 대는 눈부심 또는 프라이버지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202동 지하에 기반시설용 빗물저류조가 설치될 예정임..
- 201, 202, 206, 207, 208, 209동의 총고는 2,850m (찬정고 2,300m)이며, 203, 204, 205동의 총고는 2,900m (찬정고 2,350m)임.

- 307동 사쪾하찬변 대지경계선에서보강토용벽이 길이 약 70m, 높이 3m로 설치될예정임.
- 306동 남쪽으로 채육공원경계산에 조경석이 약 110m, 높이 1~3m로 설치될예정임.
- •302동, 303동 북쪽으로 도로경계산에 조경석이 길이 약 55m, 6 5m높이 1~3m로 설치될 예정이며, 303동~305동 우측경계산에 경계석이 길이 약 140m로 설치될 예정인.
- 302동과 307동 사이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음 .
- 306동, 307 동저층부세대는 체육공원과 인접하여 소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대지 서축 18m 하쳔변으로 자전거도로가 있으며 북동측 11m도로와 남측 18.5m~21.5m도로와 연결 예정임.
- •대지 동축으로 진원아파트와 늘푸른 오스키빌이 있어 조망권 등을 쳐해받을 수 있고 남축으로 체육공원이 접해있음.
- 주출입구에서 남동쪽으로 약 190m인근에 삼기초등학교가 있음.
- •대지 동축으로는 진우아파트와 늘푸른이파트 사이에는 도시계획시설인 공공공지와경관독지가 설치될 예정임.
- 303동 우측에 보강토 왕벽이 길이 25m, 높이 1~3m로 설치될 예정임.
- 301동 지하에 기반시설용 빗물저류조가 설치될 예정임.
- 303, 304, 305, 306동의 충고는 2,850m(천정고 2,300m)이며, 301, 302, 307동의 충고는 2,900m(천정고 2,350m)임.

감리자 및 감리금액					
구분	회사 명	감리금액(원)	부가세 구분	비고	
건 축 감 리	(주)유탑엔지니어링	3,645,621,682원	부가세별도	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전 기 감 리	(쥐)동일건축사사무소	589,880,000원	부가세별도		
소 방 감 리	(쥐)라기/술단	260,000,000원	부가세별도		
정보통신감리	(주)종합엔지니어링 디인	181,818,181원	부가서별도		

택자비 감정평가 금액 및 기관						
			(단위 : 원)			
구분	감정평가기관	감정평기액	비고			
A1블릭(1단지)	(주) 제일 감정병가 법인 (주) 가운 감정병가 법인	34,755,874,250				
A2블럭(2단지)	(주)니라감정방가법인 (주)경일감정방가법인	114,984,098,977	2개 기판 평가금액의 산술 평균 금액			
A3블럭(3단지)	(주)중앙 감정평가법인 (주)대화감정평가법인	87,751,657,035				

- 본 이파트는 주택법제21조 2의 규정에 의거 주택성능등급인정기관으로부터 이래와같이 주택성능등급을인정받음.
- 좪성등급 행별 등급

성능부분	성 능법 주	세부성능항목	등급
	경향충격음		4
소 음	중량충격음		4
소 늄	화장실소음		2
	경계소음		2
	기변성		4
	서왕(8	전용부분	4
구 조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	공용부분	4
	내구성		3
	조경(외부환경)	외부공간 및 건물외피의 생태적기능	3
		자연토양 및 자연지반의 보전	2
환 경	일조(빛환경)		3
환 경 ·	실내공기질	실내공/ 오염물질 저방출자재의 적용	1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	2
	에너지성능 (열환경)		3
	놀이터 등 주민공동사설		1
생 활환 경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배려	전용부분	3
		굥벂	2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3
화재·소방	화재·소방	배연 및 피난설비	3
		내화성 능	3



- 본 이파트는 주택법제21조 2의 규정에 의거 주택성능등급인정기관으로부터 이래와같이 주택성능등급을인정받음.
- 좪쑝등급 행별 등급

성능부분	성능범주	세부성능항목	등급
	경향충격음		4
소 음	<i>중</i> 충경음		4
至 亩	회장실소음		2
	경계 ^{소음}		2
	기변성		3
구 조	수리용이용	전용부분	4
구 조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	용뿐	4
	내구성		3
	조경(외부환경)	외부공간 및 건물 외피의 <i>생</i> 태적기능	3
		자연토양 및 자연자반의 보전	4
환 경	일조(빛환경)		3
된 경	성 실내공/[일 에너지성등(열환경)	실내공/ 오염물질 저방출자재의 적용	1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	2
			3
	놀이터 등 쥐민 광동시설		1
생 활환 경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배려	졍 분	3
		공용 부분	2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3
화재·소방	화재·소방	배연 및 피난설비	3
		一番な	3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21조 2의 규정에 와거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아래와같이 주택성능등급을 인정받음.

■ 주택성능등급 항목별 등급

성능부분	성능범주	세부성능항목	등급
	강량충격음		4
소 음	중량 충격음		4
2 -	화장실소음		2
	경계소음		2
	기변성		3
	수리용/용	전용 부분	4
구 조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	용벂	4
	내구성		3
	조경(외부환경)	외부공간 및 건물 외미의 생태적 가능	2
		지연토양 및 자연지반의 보전	3
환 경 -	일조(빛환경)		3
환 경 -	살내공7일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자자의 적용	1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	2
	에너지성능(열환경)		3
	놀이터등 주민공동시설		1
생 활환 경	고령자등 사회적 약자의 배려	전용 부분	3
		용뿐	2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3
화재 · 소방	कंसा · 소방	배연 및 피난설비	3
		나 하성능	3



구분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번호
A1 블럭(1 단지)		금 육백오십억이천팔백육십구만원정 (₩ 65,028,690,000)	제 01282011-101-0001000호
A2블럭(2단지)	입주 자모집공 고승인 일부터 소유 권보존등 기일(사용 검사포함)까지	금 일천칠백삼십이억삼백만원정	제 01282011-101-0001100호
A3블럭(3단지)		금 일천사백사십사억사천일백칠십삼만원정 ₩ 144,441,730,000)	제 01282011-101-0001200호

■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약관 중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전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 채무의 내용 : 보증회사는 주백법 사항명 제106조 제항 제1호 기목에 따라 주체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약을 부담합니다.
- 보증 이행 대상이 이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유[분강권 양도자와 관련하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체 권자에게 보증체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체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 2. 주체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등 정상계약자가 이닌 지에게 부담한 체무
-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4. 보증체권자가 압주자 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압주금 납부계좌인주자 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 분양 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압주금 납부계좌를 변경,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 하지 이니한 압주금
- 5. 보증회사가 보증채 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사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납부한 입주금
-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 비용 , 기타 종속채무
-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체무자가 보증 채권자에게 빈환하여야 할 입주금
- 12. 주체무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냐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자체상금
- 13. 주택공급에만한규칙에 따라 일주자모집공교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라시설의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랑번택품목(예시 : 홈오토 , 발코니사시, 미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와 관련된 금액
- 14. 보증제권자가 제6조의 보증제무이행 참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않는 등 기타 보증체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치무
- 15. 주체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광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체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으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해약을 체결하여 남부한 업주금
- 16. 주체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체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 행으로 보증체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체권자는 잔여 압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압주금 응보증회사에 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압주금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이나합니다.

-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발생한 경우 보증사고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 2. 임사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입구금의 90파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시행사(수탁자):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주택건설사업자번호: 서울 주택 2001-0030 / 부동산개발업번호: 서울 070012)
- 위탁사: 주식회사 오피에이(주택건설사업자번호: 경기 주택 2008-0105)
- 시공사: 두산중공업주식회사(토목건축공사업 면허번호: 909호)
- 견본주택 위치 :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888번지 외 11필지(분양문의 ☎ 1577-2883)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문의 1577-2883

시행 KAIT 한국자산신탁 시공 DOOSAN 두산중공업

